

미국 제232조 품목별 관세부과와 조사현황

... 철강,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반도체 및 의약품 등 조사현황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허난이 연구위원

김사라 · 이영민 연구원

목차

- I. 미국 232조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 II. 현재 진행 중인 조사 현황
- III. 우리 기업의 품목별 대미 수출 현황과 영향 전망
- IV.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제232조 품목별 관세부과와 조사현황

... 철강,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반도체 및 의약품 등 조사현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¹⁾을 발표하고 기본관세, 상호관세 등 국가별 관세와 품목관세를 부과해 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4월 부과방침을 밝힌 뒤 각국과 협상을 위해 8월 1일까지 90일간 유예를 했다. 그러나 1962년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근거하여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때부터 동 법에 따른 관세부과를 적극활용해 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도체, 의약품 등에까지 조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면서 자동차 품목관세를 일부 조정했으나 막대한 대미 투자 등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또한 현재 조사중인 품목에 새로운 품목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사대상품목도 계속 확대될 수 있음에 비추어 기업들의 대응이 절박하다. 본 보고서는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현황, 진행중인 조사 상황과 대미수출의 영향을 살펴봤다.

I. 미국 232조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 ① (철강 및 알루미늄) 2018년 3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조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쿼터,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 TRQ)을 설정하여 수입을 조정하거나 적용 면제(exemption)하는 등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2025년 3월 12일부터 철강 25%, 알루미늄에 대해선 상향 조정된 25%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최근 6월 4일 관세율 자체를 50%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세탁기, 냉장고 등 파생제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도 그 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미-영 경제 번영 협정(US-UK Economic Prosperity Deal)에 따라 기존 25% 관세율을 유지하였다.²⁾
- ② (자동차 및 부품) 2018년 5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하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상무부는 2019년 2월 17일, 해당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³⁾

CONTACT



연구위원 허난이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연구원 김사라
T: 02.6386.6560
E: sara.kim@leeko.com



연구원 이영민
T: 02.6386.6515
E: youngmin.lee@leeko.com

당시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관련 국가들(유럽연합, 일본, 등)과 개별 협상을 추진했다.⁴⁾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2019년의 조사 결과와 상무부의 추가 의견을 근거로 승용차 및 경트럭에 25% 관세를 2025년 4월 3일부터, 주요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5월 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세는 기존 MFN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기준 충족 시 비미국산 부품 가치에 한해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⁵⁾ 이후 미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을 대상으로 2년간 수입 조정 상쇄(import adjustment offset) 제도가 도입되어, 제조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년차 자동차 소비자 권장가격의 3.75%, 2년차 2.5% 수준의 환급을 받아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를 상쇄할 수 있다.⁶⁾ 2025년 6월에는 상무부가 대상 부품 확대 절차를 마련하여, 미국내 제조업체 요청 시 추가적으로 수입 부품을 제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⁷⁾

표1 미국의 제232조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품목	조사 관련문서	조사 개시 및 발표일	조치 관련 문서	조치 내용	후속조치
1 철강	82FR19205	조사개시 (2017.4.19) 결과발표 (2018.1.11)	Proclamation 9705 (2018.3.8)	25% 관세 부과 (2018.3.23)	일부 국가에 대한 면제 (한국 관련 Proclamation 9740 등)
	파생제품	-	Proclamation 9980 (2020.1.24)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2020.2.8)	
	철강 및 파생제품	-	-	Proclamation 10896 (2025.2.10)	25% 관세 대상품목 확장 및 모든 면제 폐지 (2025.3.12)
	-	-	Proclamation 10947 (2025.6.3)	50% 관세 부과 (2025.6.4)	-
2 알루미늄	82FR21509	조사개시 (2017.4.26) 결과발표 (2018.1.19)	Proclamation 9704 (2018.3.8)	10% 관세 부과 (2018.3.23)	일부 국가에 대한 면제 (한국 관련 Proclamation 9740 등)
	파생제품	-	Proclamation 9980 (2020.1.24)	파생제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2020.2.8)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	-	Proclamation 10895 (2025.2.10)	25% 관세 부과 및 모든 면제 폐지 (2025.3.12)
	-	-	Proclamation 10947 (2025.6.3)	50% 관세 부과 (2025.6.4)	-
3 자동차 및 부품	83FR24735	조사개시 (2018.5.23) 결과발표 (2019.2.17)	Proclamation 9888 (2019.5.17)	관세 부과 유예, 무역대표부(USTR)에게 관련 국가들과 자발적인 수입 제한 협상 지시	
	자동차	-	Proclamation 10908 (2025.3.26)	25% 관세 부과 (2025.4.3)	수입조정 상쇄제도 도입 (Proclamation 10925) (2025.4.29)
	부품	-		25% 관세 부과 (2025.5.3)	

II. 현재 진행 중인 조사 현황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 출범이후 2025년 7월 현재까지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포괄적인 국가 안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표2 참조), 이는 결국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조사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하기도 하였다. 제232조 조사 절차에 따르면, 조사개시일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어야 하나, 최근에는 동 기한보다 더 빠르게 조사를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구리)** 상무부는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14220)에 따라, 2025년 3월 10일 구리의 모든 형태(예: 원광, 구리 정광, 정제 구리, 구리 합금, 고철 구리 등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구리는 국방 분야, 인프라, 청정 에너지, 전기차, 첨단 전자기기 등 신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이다. 미국 시장 내 구리의 60%정도가 캐나다와 칠레에서 수출된 것이며, 이처럼 미국의 구리 해외의존도는 매우 높다.⁸⁾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9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Truth Social)을 통해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⁹⁾
- ② **(목재)** 상무부는 2025년 3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223)에 따라, 2025년 3월 10일에 원목, 목재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미국은 자국에서 소비하는 목재의 약 30%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다.¹⁰⁾ 조사 개시 공고나 행정명령 모두 "파생제품"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종이 제품, 가구, 캐비닛 등을 파생제품의 예로 언급하고 있어서 한국산 싱크대 등 매우 광범위한 품목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를 지시하면서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¹¹⁾
- ③ **(반도체)** 2025년 4월 14일 발표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4월 1일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별도 행정명령 없음). 조사 범위에는 반도체 기판 및 베어 웨이퍼, 레거시(구형) 칩, 최첨단 칩, 마이크로전자장치,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SME) 부품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고,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입은 상위 5개국 (중국, 대만,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이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¹²⁾ 루트닉 상무장관은 4월 14일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한두 달 내에"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¹³⁾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 또한 각료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에 관한 관세 조치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¹⁴⁾
- ④ **(의약품)** 2025년 4월 14일 발표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4월 1일부터 완제 의약품(제네릭 및 비제네릭 모두), 의료 대응 물품, 주요 원료(예: 의약품 유효성분 및 주요 시작물질), 그리고 이들 품목의 파생제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은 제네릭(복제약) 정제 및 캡슐의 약 80%, 브랜드 의약품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체 의약품 수입의 44% (중량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¹⁵⁾ 또한 미국은 활성제약성분(API, 원료의약품)의 88%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인도가 미국 의약품의 주요 API 공급국이지만, 그 API의 약 70%는 중국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8일 각료 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외국 업체가 미국에 제조·생산 시설을 들여오는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부여한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가령 20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⁶⁾

- ㉔ (트럭) 2025년 4월 25일 발표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트럭(승용 목적 외 상용차 포함)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4월 2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중형 트럭은 총중량이 1만lb(파운드)보다 많지만 2만6천1lb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 트럭은 총중량이 2만6천1lb 이상인 트럭을 의미한다. 부품은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부품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트럭의 거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수입 트럭의 80%를 차지한다.¹⁷⁾
- ㉕ (광물) 상무부는 2025년 4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272)에 따라, 2025년 4월 22일에 핵심광물(critical mineral)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핵심광물’의 정의에는 50개의 핵심 광물과 우라늄, 그리고 17개의 희토류 광물이 모두 포함되며, 가공된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을 포함한다. 미국은 12개의 핵심광물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28개의 핵심광물에 대해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¹⁸⁾ 특히,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량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다. 또한 ‘파생제품’의 정의에는 반도체 웨이퍼, 양극 및 음극재와 같은 중간재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과 같은 최종상품까지 예시로 언급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난 6월 15일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미지수다.¹⁹⁾
- ㉖ (상업용 항공기 등) 2025년 5월 13일 발표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따르면, 상무부는 상업용 항공기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5월 1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여객기 및 화물기를 포함한 완성형 항공기뿐만 아니라, 동체, 날개, 착륙장치, 항공전자장비, 제트엔진, 추진체계 등 주요 구성 부품이 포함된다.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순수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출보다 330억 달러 더 많은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약 50%는 유럽연합(EU), 25%는 캐나다에서 수입했다.²⁰⁾
- ㉗ (폴리실리콘) 상무부는 7월 1일에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폴리실리콘’에는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실리콘이 포함되며, 이의 정제 및 가공물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파생제품’의 정의에는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중간재와 완제품이 언급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고순도 폴리실리콘과 이를 활용한 태양광 부품 전반이 폭넓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패널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세계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제조 장비 상위 10개 공급업체 모두 중국에 위치해 있어 폴리실리콘 글로벌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도가 매우 높다.²¹⁾
- ㉘ (드론)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 발표된 행정명령(E.O. 14307)을 통해 미국의 국내 드론 산업 지원과 생산 기반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상무부는 7월 1일에 무인항공기(UAS), 즉 드론 및 그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232조 조사를 시작하였다. ‘드론’의 정의에는 상업용, 산업용, 군사용 무인기뿐 아니라 감시장비, 항법시스템, 통신모듈 등 주요 구성품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와 제어시스템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파생제품’의 정의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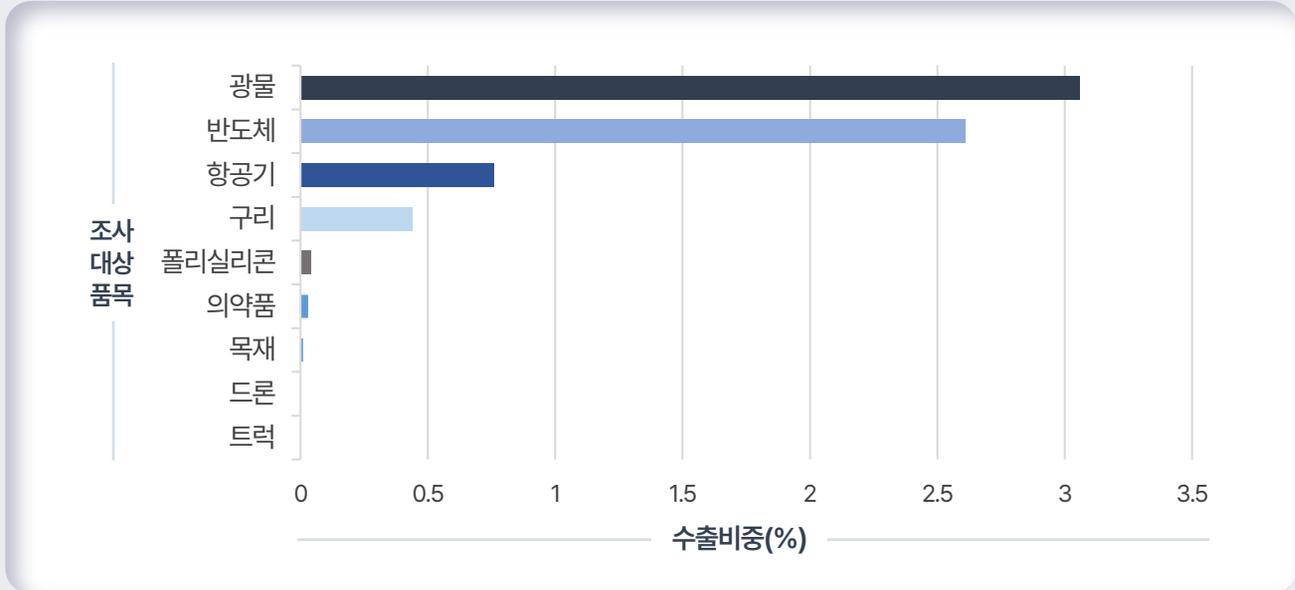
드론에 탑재되는 센서, 배터리, 카메라, 데이터처리 장비 등이 언급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부품 및 완제품이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80%를 생산하며 DJI는 소비자용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²²⁾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일부 DJI 드론의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관련 제품의 반입을 보류 중이다.²³⁾ 비록 직접적인 제232조 조사 지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드론의 상업화·수출 확대, 공공 조달 우선 사용 등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품목	행정명령	관련문서	조사 개시일	조사현황
1 구리	E.O.14220	BIS-2025-0010	2025.3.10	의견 제출 마감일: 2025.4.1. 50% 관세 부과 예상일 ²⁴⁾ : 2025.8.1.
2 목재	E.O.14223	BIS-2025-0011	2025.3.10	의견 제출 마감일: 2025.4.1.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5.12.5
3 반도체	없음	BIS-2025-0021	2025.4.1	의견 제출 마감일: 2025.5.7.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5.12.26
4 의약품	없음	BIS-2025-0022	2025.4.1	의견 제출 마감일: 2025.5.7.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5.12.26
5 트럭	없음	BIS-2025-0024	2025.4.22	의견 제출 마감일: 2025.5.16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6.1.17
6 광물 (배터리 등)	E.O.14272	BIS-2025-0025	2025.4.22	의견 제출 마감일: 2025.5.16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6.1.17
7 항공기, 제트엔진 및 부품	없음	BIS-2025-0027	2025.5.1	의견 제출 마감일: 2025.6.3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6.1.26
8 폴리실리콘 (태양광)	없음	BIS-2025-0028	2025.7.1	의견 제출 마감일: 2025.8.6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6.3.28
9 드론 (UAS)	없음 참고: E.O.14307	BIS-2025-0059	2025.7.1	의견 제출 마감일: 2025.8.6 조사개시부터 270일 후: 2026.3.28

III. 우리 기업의 품목별 대미 수출 현황과 영향 전망

이처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조사 및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관련 품목별 對미국 수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 명령이 공표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HS코드상 품목이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행정명령이나 관보의 조사 개시 공고 등에서 언급한 품목명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수출 현황은 부록 참조)** 특히 이번에 개시된 조사들은 그 범위가 단순히 해당 품목 그 자체 뿐 아니라 광범위한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1 우리 기업의 조사대상 품목 대미 수출액 순위 (2024년도 수출비중 기준)



2024년 기준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액은 약 1,278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현재 미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품목 중 반도체, 배터리 (광물 파생제품), 항공기 제트엔진 등은 수출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이차전지(HS 8507)로, 약 38억 8,083만 달러가 수출되어 전체 대미 수출의 3.0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자집적회로(EIC, HS 8542)가 약 16억 4,414만 달러(1.29%), 반도체 제조장비(HS 8486)가 10억 393만 달러(0.78%)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핵심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항공기 및 부품 관련 품목도 주목할 만하다. 항공기용 터보제트엔진(HS 8411) 수출은 6억 8,182만 달러로 비중 0.53%를 기록했고, 상업용 대형 항공기(HS 8802.40) 수출도 2억 9,665만 달러(0.23%)에 달했다. 상기 품목들의 경우 향후 품목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와 그 제품(HS 74)은 5억 7,366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의 0.44%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등에 사용되는 전도성 소재로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구리 스트립, 와이어, 판재류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수입의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와 연계하여 수출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²⁵⁾

폴리실리콘(HS 2804.61)의 경우, 고순도(99.99% 이상) 제품이 5,107만 달러 수출되어 전체의 0.04% 수준에 머물렀다. 의약품(HS 3003, HS 3004)의 경우 또한 일반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이 각각 2,159만 달러와 3,118만 달러 수출되어 총 5,277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액 대비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타깃 국가들과 글로벌 공급망 연관성으로 인해 관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예: 말레이시아 공장) 미드스트림에 집중 (예: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²⁶⁾ 한국의 의약품 시장은 바이오시밀러²⁷⁾ 부문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인도의 저렴한 원료의약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²⁸⁾

드론(무인항공기, HS 8806류)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드론 관련 수출액은 미미하며, 1,177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 대비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한국산 드론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특히 국산 드론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라는 점 (전체 한국산 드론 수출의 42.3%)에서 주의가 필요하다.²⁹⁾

그 외 품목들 중 목재 및 목탄(HS 44) 품목은 수출액이 1,555만 달러로 전체의 0.01%에 그쳤다. 또한 트럭(HS 8704) 완성차 수출도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총 중량 5~20톤 트럭(HS 8704.22)의 수출은 6만 달러에 불과했고, 20톤 초과 트럭(HS 8704.23)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트럭 부품의 경우 이미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HS 8708)에 모두 포함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대미 수출 품목 중 일부는 수출 규모가 크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국산화, 우선조달 정책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항공기 부품 등은 향후 미 연방정부의 232조 관세정책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광물, 구리 등은 전략물자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수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폴리실리콘과 의약품의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드론의 경우 아직 수출 규모는 작지만 향후 산업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관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IV.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 통상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조치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된 바 있으며, 대상 품목의 확대는 그 영향력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미국 정부의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상무부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여 자사 제품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전에 '면제(exemption)'와 같은 우호적인 대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면제조치는 대통령 또는 상무부가 외교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가나 품목 전체에 대해 관세 적용을 전면 면제하는 조치로, 조사 단계 또는 관세 부과 결정 직후에 이루어진다. 예컨대,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우리 정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한미 통상 협의회를 통한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우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치를 방지하고, 유사한 입장의 주요국 기업·정부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는 전략도 국제적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

둘째,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미 상무부의 '제외 절차(exclusion process)³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관세가 부과된 이후, 미국 내 수입자나 기업이 개별 품목에 대해 관세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미국 내에서 해당 품목을 대체 생산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기술적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 전문가 및 국내외 로펌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세 부과 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미국 현지화를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 등을 통해 현지 고용 창출 및 국가안보 기여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규제 회피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접근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타깃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3국으로의 공급망 이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232조 조치는 단기적 통상장벽을 넘어 전략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법률적 대응, 공급망 전략, 외교적 연계 등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우리 기업의 조사대상 품목별 대미 수출 현황

(2024년도 기준, 전체 대미수출액: 1,278억 달러)

품목	HS코드 (예시)	품목명	수출액 (단위: 달러)	비중 (%)	
1	구리	74	구리와 그 제품	5억7,366만	0.44
2	목재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1,555만	0.01
3	반도체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억9,010만	0.54
		8542	전자직접회로 (EIC)	16억4,414만	1.29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 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10억393만	0.78
4	의약품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2,159만	0.01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 제3005호 ·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118만	0.02
5	광물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 · 이트륨 ·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 유기 화합물	2,667만	0.02
		8507	전지 및 축전지(그 부품 포함)	38억8,083만	3.04
6	트럭	8704.22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6만	0.0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0.0
7	상업용 항공기, 제트엔진및 부품	8802.2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3만	0.0
		8802.30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	0.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2억9,665만	0.23
		8411	항공기용 터보 제트 엔진 등	6억8,182만	0.53
8	폴리 실리콘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5,107만	0.04
9	드론	8806.10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	-	0.0
		8806.21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5만	0.0
		8806.22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1,169만	0.0
		8806.23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3만	0.0

주1) UN Comtrade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KITA) 통계 자료 참조) 작성하였으며, 각 품목별 구체적인 HS 코드가 명시되지 않아 일부 통계수치가 입수 가능한 품목만 위주로 예시적으로 작성하였음에 유의.

주2) 전체 대미 수출액에서 비중이 0.5%가 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음영 표기.

- 1) 자세한 내용은 광장 국제통상팀 뉴스레터, "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2025.1)
참조: <https://www.leeko.com/news/intt/202501/intt2501.pdf>
- 2) Proclamation 10947,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and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6/adjusting-imports-of-aluminum-and-steel-into-the-united-states/>
- 3)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ffect of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on the National Security: An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2019.2.17).
-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232 Auto Investigation (2020.1.31) .
- 5) KITA,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조치 주요내용과 영향 (2025.4.11).
-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2323 Automotive Tariffs: Issues for Congress (2025.5.14).
- 7) U.S. ITA.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s New Auto Parts Tariff Inclusions Process", (2025.6.24)
참조: <https://www.trade.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announces-new-auto-parts-tariff-inclusions-process>
- 8)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9) CNN, "Trump threatens 50% tariffs on Brazil if it doesn't stop the Bolsonaro 'witch hunt' trial", (2025.7.11):
<https://edition.cnn.com/2025/07/09/economy/tariff-letters-trump>
- 10)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11) Reuters, "Trump orders new tariff probe into US lumber imports", (2025.3.3):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orders-new-tariff-probe-into-us-lumber-imports-2025-03-02/>
- 12)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13) ABC News, "Commerce Secretary Lutnick says tariff exemptions for electronics are only temporary", (2025.4.14):
<https://abcnews.go.com/Politics/commerce-secretary-lutnick-tariff-exemptions-electronics-temporary/story?id=120752319>
- 14) Reuters, "Trump says steep copper tariffs in store as he broadens his trade war", (2025.7.9);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south-korea-seek-soften-tariff-blow-before-august-deadline-2025-07-08/>
- 15)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16) WSJ, "Trump Says 200% Pharma Tariffs Are Coming. Wall Street Shrugs.", (2025.7.13):
<https://www.wsj.com/health/pharma/trump-says-200-pharma-tariffs-are-coming-wall-street-shrugs-16b7dbc4>
- 17)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18) Ibid.
- 19) 연합뉴스, "정부, 핵심광물 관세부과 고려 못에 대미투자 강조하며 협력당부", (2025.6.9):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9000200071>
- 20) CFR, "A Guide to Trump's Section 232 Tariffs, in Nine Maps", (2025.1.10)
참조: <https://www.cfr.org/article/guide-trumps-section-232-tariffs-nine-maps>
- 21) IEA, "Sola PV Global Supply Chains", Executive summary (2022.7)
참조: <https://www.iea.org/reports/solar-pv-global-supply-chains>

- 22) NYT, "Taiwan and U.S. Work to Counter China's Drone Dominance", (2024.9.25):
<https://www.nytimes.com/2024/09/25/world/asia/us-taiwan-drones-china.html>
- 23) Reuters, "US Customs halts some drone imports from Chinese manufacturer DJI, company says", (2024.10.17):
<https://www.reuters.com/world/us/us-customs-halting-some-drone-imports-chinese-manufacturer-dji-company-says-2024-10-16/>
- 24) Reuters, "Trump announces 50% tariff on copper effective August 1", (2025.7.10):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announces-50-tariff-copper-effective-august-1-2025-07-10/>
- 25) MOTIE, "Comments on the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n Imports of Copper", (2025.4.1) 참조.
- 26) 강정화, "2023년 상반기 태양관산업 동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3.7.25), P. 17 참조.
- 27)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으로, 바이오신약보다 저렴한 개발비용과 짧은 개발 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 28) 한주희, "주요국의 제약, 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11, (2024. 11.1) 참조.
- 29) 서울경제, "수출 3배 된 K드론, 트럼프 중제재에 '날개' 다나", (2025.1.19) 기사 참조.
- 30) 일레로 철강에 대한 미국의 제232조 관세와 관련한 제외(exclusion) 신청 절차 설명
참조: <https://www.bis.doc.gov/index.php/232-steel>

-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